

1. 개정이유

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6조 제3항의 구급대원 연간 특별교육훈련 의무 이수 40시간에 대해 감염병 대응 등 업무 과중 시 의무 이수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로 구급대원 업무 하중을 개선하고, 제5항 및 제6항의 구급지도관 명칭을 “구급전문교육사”로 개정하여, 동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구급지도의사 등 유사 명칭에 의한 혼선 개선 및 용어가 내포한 구시대적 잔재를 탈피하여 구급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역량 향상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구급대원 연간 교육훈련 의무이수 40시간에 대한 단축 근거 신설

- 1) 다만, 소방청장이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의 사유로 업무 과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해 특별교육훈련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. 신설(제26조 제3항)

나. “구급지도관”을 “구급전문교육사”로 고침(제26조 제5항, 제6항)

- 1) “지도관 명칭 자체의 부정적 의미(권위적 표현, 일제 강점기 위만군의 고문장교를 의미함)에 따라 용어 순화 등 목적으로 구급전문교육사로 개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소방청장이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의 사유로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해 특별교육훈련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.

제2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구급지도관으”를 “구급전문교육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구급지도관”을 “구급전문교육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6조(구급대원의 교육훈련) ① · ② (생략)	제26조(구급대원의 교육훈련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
③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. <단서 신설>	--. 다만, 소방청장이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의 사유로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해 특별교육훈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<u>구급지도관</u> 으로 선발할 수 있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구급전문교육사</u> ----- ---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대원의 교	⑥ ----- -----

육훈련 및 <u>구급지도관</u>의 선발·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 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	----- <u>구급전문교육사</u>----- ----- -----.
---	---